제329회 임시회 2014.04.14.(월)

심 사 보 고 서

O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교 육 위 원 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04.14.(월) 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03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04월 02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04월 11일

(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가. 제안이유

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 및 통합 청주시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로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145명으로 8명 증원(안 제2조)

- 2)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(안 제3조)
- 3)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3)
 -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단위기관별 조정:

교육지원청 △1, 직속기관 +1

구 분	정	원 변경사	ਮੀ ਹ	
	개정전	개정후	증감	비고
정무직공무원	1	1	0	교육감
일반직공무원	2,893	2,901	8	
연구직공무원	12	12	0	연구사
교육전문직원	231	231	0	
총 계	3,137	3,145	8	

3. 검토보고 요지

(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정대희)

- O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1) 8명을 반영하고,
- O 통합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2)로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며,
- O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"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 공무원"으로 명확히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.

¹⁾ 병설유치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
²⁾ 청원교육지원청 폐지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"3,137명"을 "3,14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2,899명"을 "2,907명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지방공무원"을 "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 각급학교		
총계	3,145		-	-			
정무직 계	1		1				
교육감	1		1				
일반직 계	2,901		-	-			
3급	1		1				
3·4급	4		4				
4급	19	1	17	1			
5급이하 소계	2,864		-	-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	-				
연구직 계	12	-					
연구사 소계	12	-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20	11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-		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	제2조(정원의 총수)
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137명</u>	3,145명
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	2
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899명(</u> 제3	:: <u>2,907명</u>
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)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<u>지방공무원</u> 의 종류	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<u>특정직공무원을</u>
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외한 지방공무원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[별표 3]	[별표 3]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		도의회	본청	교육지워청	공립
지급별 기원들	총계			(소속기관 포함)	0 -
총계	<u>3,137</u>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893</u>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<u>2,856</u>	-			
전문경력관 계	13	-			
연구직 계	12	-			
연구사 소계	12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<u>19</u>	<u>12</u>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	_	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
총계	3,14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901</u>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<u>2,864</u>	-			
전문경력관 계	13	-			
연구직 계	12	-			
연구사 소계	12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<u>20</u>	<u>11</u>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-	

관계법령발췌

-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- 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 -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 - 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-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 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 -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 -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 - 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 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